

# 한국생약보

2004년 8월 1일

THE HANKOOK-SAENGYARK BO

발행인 겸 편집인  
인 쇄 인  
엄경섭  
장옥환  
  
발행소 사단법인 한국 생약 협회  
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-55  
TEL:967-8133 FAX:965-0643

믿고 찾을 수 있는곳!

한국생약협회 직영

**국산한약재 상설매장**

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, 소비자  
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.

TEL:(02)967-4984

(1975년 6월 20일 창간) 제260호

## 성명서

- 한의약육성법은 국산한약재를 독점하고 농민생산활동을 저해합니다 -

# 재배생산부문에 전문성없는 복지부가 농가재배서부터 의약품 관리는 '어불성설'

최근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국회 통과된 한의약육성법을 기반으로 국산한약재를 재배에서부터 가공 및 유통 제조과정까지를 의약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 그러나, 이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국산한약재 규격화사업의 재판이며, 더구나 생약생산기반이 갈수록 위축돼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재배생산단계에서부터 의약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산한약재를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소비업체가 독점함으로서 농민의 자유로운 생산활동 및 판로를 저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우리 생약 생산 농민은 이 법의 시행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.

### ▶ 한의약육성법 시행은 생산농민들의 생산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업체에 귀속되는 지배구조 형성으로 농가소외가 우려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농민이 생산하는 모든 국산한약재에 대해 자가 규격을 인정, 단순가공 절단하여 한방병원이나 한약방 등에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도록 판로가 보장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업체(제조업자, 유통업자 등)와의 계약재배를 통해서만 국산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. 결국 소비업체의 요구에 의해 생약재 배농민들의 생산활동(판로, 수매가격결정 등)이 제약을 받고 귀속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됨으로서 농가소외는 물론 국내생약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릅니다.

### ▶ 복지부가 한약품질인증사업 추진으로 생산 재배단계까지를 관리하게 될 경우, 생산 농민의 판로가 제한됩니다.

- 지금 당장은 한약재품질인증사업의 참여범위가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처

럼 돼 있지만 향후 궁극적으로는 복지부 품질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재는 원료의약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서 생산 농민들의 자유로운 판로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.

### ▶ 한의약육성법의 실질적 수혜자는 농민이 아닙니다.

- 또한,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약육성법 안에서의 품질인증사업은 표면적으로는 국내 생약농업육성 차원에서 생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한 생약생산가공관리 및 유통일원화 정책의 일환이며, 실제 생산농민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한약재를 계약재배하고 가공 유통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

### ▶ 원가상승으로 국민의 의료·보건 비용 부담만 가중됩니다.

- 한약재 품질인증제 시행으로 복지부가 한약재를 원료의약품으로 생산 관리할 경우 반드시 제조업소를 통해야 하므로 현재보다 최소한 30~40%의 원가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오히려 소비자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.

### ▶ 한약재 품질관리는 수입한약재부터 우선돼야 합니다.

- 한의약육성법은 현재 국내시장의 약 30%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산 한약재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, 실제 한약시장 등에서 안전성 및 위해성에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수입한약재는 제외돼 있습니다. 시중유통의 7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입약재부터 엄격한 품질관리가 우선 적용 시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시대착오적 법안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.

### ▶ 재배부분에 전문성 결여 및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결과초래

- 재배생산부문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복지부가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인증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그럼에도 현행 농림부가 2003년부터 1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시행중인 GAP인증을 무시하고 복지부 독자적인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,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, 생약생산농가들의 혼란은 물론 부처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정부 예산 낭비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.

### ▶ 우수한약재 생산 및 관리의 주체는 생약농민이 돼야 합니다.

- 각 부문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. 제조·유통업자는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제제 및 한약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과정 등 재배 생산 이후의 단계를 담당하고 품종육성사업을 포함한 한약재의 재배생산관리 부문은 우리 생약 생산농민들이 주체가 돼야 함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. 또한 복지부는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제제 및 한약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과정 등 재배 생산 이후의 단계부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적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한의약육성법시행령에 따른 우수한약관리기준의 재배생산관리는 농림부 약용작물 GAP 제도로 대체돼야 합니다.

농민이 생산하는 약용작물,  
의약품 관리 웬만인가  
허울 좋은 품질관리  
생약 생산기반 초토화 된다 !